

1. 개정이유

「수의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 명령의 절차, 기간 등 부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안 제22조의15 개정)

- 진료비 미게시는 진료비 게시 명령 등을 부과하고(제1항), 진료비 초과 징수는 재발 방지 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제2항)

나. 동물보건사 자격인정 서류 제출 기한 명시(안 제14조의2)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다. 수의사 행정처분 감면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개정)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화 및 가축방역·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응시 원서(별지 제11호의2),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별지 제13호) 등 행정 서식 일부 수정

-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에 분실 사유 작성란 추가,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응시 원서에 응시자격 기준 체크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의15를 제22조의16으로 하고, 제22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또는 진료비용 게시 방법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있을 때”를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효력정지와 면허효력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다.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현재 공수의로 활동 중이거나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나. 과거 5년 이내에 공수의로 활동한 사실이나 광견병,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다. 가축방역,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

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2)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

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3) 차관급 표창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일반 대상자 항목과 특례대상자 항목을 추가한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분실 사유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 ----- ----- ----- ----- ----- -----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 ----- ----- ----- ----- ----- ----- ----- -----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제22조의15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5(진료비 미게시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20조제1항에 따
른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
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진료비 게시, 진료비 게시
장소의 변경 등을 명령할 수 있
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제2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게시한 진료비 이상으로 진
료비를 징수한 경우 그 위반행
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범
위에서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
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16 (현행 제22조의15와 같음)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I. 일반기준

1.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효력정지와 면허효력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 다.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처분된 업무를 했을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
 5.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상을 고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가. 현재 공수의료 활동 중이거나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나. 과거 5년 이내에 공수의료 활동한 사실이나 광견병, 구제역 백신접종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다. 가축방역,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
 -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 2)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 3) 차관급 표창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
 6. II.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II. 제3호에 해당하면 같은 호를 적용한다.
-

[별지 제11호의2]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응시자	응시번호	성명	사진 (3.5cm X 4.5cm)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	성별 [] 남 [] 여		
	전자우편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최종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여부 [] 졸업 [] 졸업예정	졸업(예정)일		

응시대상 구분	기본대상자 「수의사법」 제16조의2	가[], 나[], 다[]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7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특례대상자	가[], 나[], 다[]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8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실습기관	
			실습기간	
총 실습시간				

「수의사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년도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표		사진 (3.5cm X 4.5cm)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원서 작성방법

1. 응시원서에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4.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5.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
6. 최종학교명란에는,
 - 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명칭을 적습니다.
 - 나.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그 기관명을 적습니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명을 적습니다.
7.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해당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8.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9. 실습교육 이수란은 특례대상자만 적습니다. 실습교육의 실습기관란에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11.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	월	일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마약·향정 신성의약품 현황 (폐업 시)	품명	수량	처분 계획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